

의정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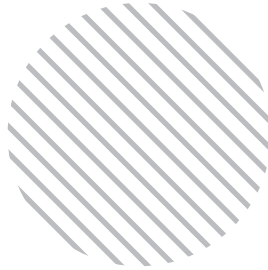
2017-6호

6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6



CHAPTER. 1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 조례

05

-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06
-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09
-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12

CHAPTER. 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5

-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16
-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8
-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21
-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24

CHAPTER. 3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2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8
-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1
-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4
- 과천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35
-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36



CHAPTER. 4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39

- 광주광역시의회 미국정부 5.18 관련 문서공개 요구 40
- 인천광역시의회 도서지역 용수부족 해결 촉구 41
- 경상북도의회 산림정책연구회 상반기 세미나 개최 42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품질 우수성 인정받다 44

CHAPTER. 5



최근 제·개정 법령

45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 의료법 시행령 48
- 산지관리법 시행령 5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3

CHAPTER. 6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5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56
-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60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17-6호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06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09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12



1.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6.7.] [충청남도조례 제4249호, 2017.6.7., 제정]

주요목적

충청남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내의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노동정책협의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자문
2.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실장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이 된다.

제12조(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해당 안전에 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

[시행 2017.6.7.] [충청남도조례 제4248호, 2017.6.7., 제정]

주요목적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복리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조정”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 간 관할구역 경계로 인한 갈등·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권고하여 경계변경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계 자치단체”란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복수의 시·군을 말한다.
3. “지원”이란 도지사가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말한다.
4. “경계조정 대상지”란 개발단계에 있는 개발 예정지로서 제4조 제1항 각호 중에서 시·군 경계조정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의 시·군 경계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다른 시·군의 경계구역에 지나치게 깊이 진입되어 원활한 행정수행이 곤란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지 않는 구역 우선 실시
2. 동일 면적 또는 등가 교환 등 관계 자치단체 간 완전 합의 유도
3. 적극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 해소 및 조속한 경계조정
4.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나대지 등 미활용 토지는 개발계획 등의 사업시행 전 경계구역 조정
5.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경계조정 절차 준수

제4조(경계조정 대상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 중 시·군에서 경계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개발사업,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발 예정지로서 아파트·공장·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건설되고, 그 관할구역이 분리될 예정인 경우
3. 도시개발·택지개발·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이 예상되는 경우
4. 개발 예정지로서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구역에 불일치되어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나대지나 개발 예정지로서 시장·군수 또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도지사가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시·군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 또는 관계 자치단체 간 경계 갈등 해소를 위해 관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시 등)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거쳐 경계조정이 필요한 대상지를 관할하는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에 대한 협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등을 할 경우 미리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율조정협의체 설치와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경계조정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율조정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자율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경계조정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군 경계조정에 따른 손실보상 제공과 경계조정 일정·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계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자율조정협의체는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3항의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계조정 주민청구)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지로서 「주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관계 시·군 읍면동 주민의 경계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관계 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경계조정 협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경계조정 지원) 도지사는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으로 손실이 발생한 자치단체에는 경계 조정에 소요되는 행정경비 및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6.7.] [충청남도조례 제4253호, 2017.6.7., 제정]

주요목적

충청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생활환경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외부항원에 대하여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질환 중 다음 각 목의 질환을 말한다.

가. 아토피성 피부염

나. 천식

다. 알레르기성 비염 및 결막염

2. “아토피질환자”란 아토피질환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토피질환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아토피질환 관계기관·단체 및 법인(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도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모든 도민은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체계적 예방·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의 추진사업

3. 기관·단체 등과 협력 및 기반 구축

4. 교육·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과적 수립 등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기관·단체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

2. 교육·홍보

3. 안심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이나 해당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마다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의 지원 등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른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17-6호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16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8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21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24



1. 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7.23.] [광주광역시조례 제4556호, 2015.7.23., 일부개정]

주요목적

광주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제2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5.3., 2012.7.10.>

1. 전·현직시장, 시정원로 자문위원 <개정 2010.5.3.>
2. 지역경제·문화예술·체육·지방행정 분야 등에서 기여한 시민 <개정 2010.5.3.>
3. 국내외의 민주·인권 운동에 기여한 시민 <신설 2010.5.3.>

제3조(대상자결정 등) ① 시민장 대상자는 시장 또는 시의회의장의 제청으로 광주광역시시민장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선정심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실·국장 4인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4인 등 9인으로 한다. <개정 2010.5.3.>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광주광역시시민장장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및 시민 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10.>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10.>

3. 그 밖에 장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2.7.10.>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2.7.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몇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7.10.>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3.7.22., 2014.9.1., 2015.7.23.>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와 지원)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 강원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6.16.] [강원도조례 제4156호, 2017.6.16., 제정]

주요목적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 서비스”란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활, 회복, 건강증진 등에 맞게 설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을 통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2. 치유농업 정책개발·추진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4.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실태조사·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 치유농업 사업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술 및 교육지원)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발전 및 치유농업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치유농업사업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컨설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농업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사업자로 선정·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부서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치유농업사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강원도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치유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회원은 치유농업관련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치유농업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도농업기술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회 회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당연직 회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대하여는 회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회원을 해당 안전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⑥ 회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⑦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회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회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회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회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 한 경우
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⑧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3. 경상북도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시행 2017.6.12.] [경상북도조례 제3928호, 2017.6.12., 제정]

주요목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물류단지게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제3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실·본부·국장이 되고, 팀장은 물류단지개발사업 담당부서 단·과장이 되며, 구성원은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교통, 환경, 산지, 농지, 문화재 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기간 및 방법 등은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현황 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법 제8조에 따른 물류단지게획 승인신청서 접수 및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조정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경상북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 물류단지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실·본부·국장 : 1명
2.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등 물류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물류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경상북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이상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7. 「산지관리법」에 따라 물류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8.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9. 「경관법」에 따라 구성된 경상북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이상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안전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4.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17.6.14.] [경기도조례 제5625호, 2017.6.14., 제정]

주요목적

경기도내 학교에서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에서 문화다양성에 기반 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교육감은 도내 학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한 교육사업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3.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관련 협력 사업)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2.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전시·출판·학술·문화 사업
3.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
4.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 확산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①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다른 나라 학교와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 외교부, 그 밖의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사업,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관련 협력 사업 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17-6호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8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1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4

과천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35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36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6.16.]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196호, 2017.6.16., 일부개정]

주요목적

종로구가 시행하는 각종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개정 2017.06.16.>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 <개정 2017.06.16.>
2. 구정에 대한 건의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개정 2017.06.16.>
3. 제도개선 및 새로운 시책 제안
4. 각종 부조리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60명 이내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 미달한 경우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그 밖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위촉한다.

1. 주민등록상 구 거주 여성 <개정 2017.06.16.>
2.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3. 구정에 관심이 많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평가단의 임원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효율적인 평가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원, 문화관광, 복지환경, 도시관리, 안전건설교통, 보건의료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10명 이내의 단원을 둔다. <개정 2017.06.16.>

제5조(임기) ① 임원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6.16.>

② 단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활동을 총괄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종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의 질병 및 단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평가) 평가단의 평가는 분과위원회 평가, 주요사업 평가, 수시 평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7.06.16.>

1. 분과위원회 평가는 각 분야별 적정사업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2. 주요사업 평가는 구 주요추진 사업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수시 평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6.16.>

제9조(평가 결과) ① 평가단의 평가 결과는 종합평가 보고회를 통하여 발표·토론한다. <개정 2017.06.16.>

② 평가단은 평가단의 활동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한 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단의 활동 및 평가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회의)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하여 연간 평가 계획과활동방향을 수립한다. <개정 2017.06.16.>
2.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위원회별 매월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종합평가보고회는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 개최한다.

② 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단원증을 발급한다.

② 구청장은 회의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6.16.>

③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보고회 개최 및 평가백서 발간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 구청장은 평가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평가단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06.16.>

2.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6.1.] [경기도광주시조례 제879호, 2017.6.1., 일부개정]

주요목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한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복지증진과 보훈
관련단체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광주시보훈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보훈관련단체의 보호·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보훈회관 및 각종 보훈단체 행사지원
3. 기타 보훈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등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24>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2010년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적립하고 기존 기금을 포함하여 15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며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2·24]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광주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보훈단체대표자, 관계공무원 등 보훈업무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중 당연직 위원은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및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3·12·24]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7·12·11>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07·12·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구리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6.19.]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521호, 2017.6.19., 제정]

주요목적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구리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제2조(정의) ①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 공간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구리시 택시쉼터
2. 소재지 : 구리시 경춘로248번길 88

제4조(운영)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및 의무에 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에 따른 제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여성 택시기사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을 고려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택시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4. 과천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6.13.]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489호, 2017.6.13., 제정]

주요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5조(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르신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차량의 이동 조치) 시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5.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6.16.] [충청북도단양군조례 제2365호, 2017.6.16., 제정]

주요목적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주요 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카이워크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란 높은 지대에 바닥이 투명한 시설로 된 구조물을 설치 한 체험형 전망시설을 말한다.
2. “짚와이어”란 양편 구조물 사이로 케이블 와이어를 설치하고 고객이 안전장비 착용 후 도르래를 이용하여 낙차에 의해 지상으로 도착하는 레포츠 시설을 말한다.
3. “알파인코스터”란 산악 지형에 선로를 설치하고 선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중력에 의해 무동력으로 하강하는 놀이시설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전망대 입장객 및 짚와이어, 알파인코스터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의 위치는 단양군 적성면 애곡리 산 1-3번지에 둔다.

제4조(시설물)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망대
2. 짚와이어
3. 알파인코스터
4. 판매시설
5. 매표소
6. 그 밖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관리 인원을 확보·배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매표 및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휴장) ① 시설물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휴장
2. 그 밖에 천재지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장은 7일 전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관리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단양군 만천하 스카이워크 시설 이용료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은 당일 한번만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객에게 혜택이 큰 어느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한 6세 미만의 영유아(전망대에 한함)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유족 또는 가족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짚와이어, 알파인코스터는 7월~8월,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감면 적용하지 아니함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징수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관리자의 책임 등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행위의 제한) 이용객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2. 흙과 돌, 나무 등을 굴취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취사 등의 행위

제13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및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
2. 유류 등 화재 위험물질을 소지 한 사람
3.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손해배상)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또는 임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17-6호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http://council.chungnam.go.kr>

광주광역시의의회 미국정부 5.18 관련 문서공개 요구 40

인천광역시의의회 도서지역 용수부족 해결 촉구 41

경상북도의의회 산림정책연구회 상반기 세미나 개최 42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홈페이지 품질 우수성 인정받다 44



광주광역시의회

미국정부 5·18관련 문서 공개 요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은방) 일동은 5·18당시 미국이 계엄군의 집단발포를 묵인, 방조한 사실을 비롯해 관련 자료의 공개와 함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국중앙정보국(CIA) 등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와 문서의 전면 공개를 미국정부에 공식 요청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학살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지난 5월 26일 미국 언론인 팀 셔록 기자가 '1979~1980년 미국 정부 기밀문서 연구 결과 설명회'를 열고 미국 국방정보국이 작성한 '광주상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문서에는 '공수여단은 만약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면 발포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이 문구를 한국 신군부의 발포명령에 대한 묵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팀 셔록 기자는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전두환 등 신군부가 터무니없는 거짓정보를 흘려 미국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했던 사실, 즉 5·18민주화운동을 폭도, 북한 간첩, 공산주의자 세력에 의한 내란으로 조작한 문서를 미국에 보낸 내용이 셔록 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됐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CIA 등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신군부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란 것을 알고 있었지만 5·18민주화운동이 한국의 안보,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대한 위협을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려 신군부의 만행과 광주의 참상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이다 .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광주광역시의회는 미국이 집단발포를 묵인, 방조한 사실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인지했던 정보와 습득한 자료 등 모든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지역 용수부족 해결 촉구

인천 도시지역의 강수량이 백령도 79.6mm에 그치는 등 평년 강수량의 37% 수준이고 저수율이 38.2%(평년대비 69.5%)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뭄으로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섬주민들은 식수, 농업용수 등 용수 부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정현) 의원들과 김경선(지역구 용진군) 의원은 도시지역 용수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마련을 위해 시 재난안전본부, 농축산유통과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관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간담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현재 시에서 도시지역에 음생활용수를 지원하고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저류지 개발,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사업 확대 등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기금 등 신속한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책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산림정책연구회 상반기 세미나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산림정책연구회」(대표 박경호 의원)는 2017년 6월 8일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면사무소에서 지역의 목재 및 건축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산 목재 이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연구회 회원을 비롯한 포항지역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을 펼쳐, 지역 목재 이용에 대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오세창 교수(대구대학교)는 “목조건축물은 타건축물에 비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적고, 내진에도 잘 견디는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고

“특히, 일본의 목재사용 진흥정책에 대해 관련 법령과 실질적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목재사용 진흥에 대한 법적 정비와 실질적 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대해 먼저, 지정 토론자인 권태호 교수(대구대학교)는 “지구적 문제인 온난가스 감소를 위해서도 목재건축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면서

“지역산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확대 등 지역의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지식 의원은 “지역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 기존의 산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으며,

최병준 의원은 “목재건축의 고비용 문제와 관련 법령의 구체적 보완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장경식 의원은 “목조건축의 고비용 문제, 화재의 취약성, 편리성 부족의 문제도 함께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김희수 의원은 “건축용 목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 목재의 수종개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에 대해 산림정책연구회 광경호 대표는 총평을 통해 “이번 세미나는 지역 목재 이용의 아젠다를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로써, 목조건축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이 활용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관련법령과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심도있는 정책연구와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포항시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 및 부산광역시 목조건축 전문회사인 니드 하우스를 방문하여 재선충 피해목 재활용 및 국내 목조건축 현황 및 동향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홈페이지, 품질 우수성 인정받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의장 신관홍) 홈페이지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하고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제도는 콘텐츠·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신뢰하고 쉽게 콘텐츠를 구매·이용할 수 있는 우수 사이트를 발굴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5월 ‘2017년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을 신청하여 6월 5일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는 이미 지난 1월에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한바 있으며 이번 콘텐츠 품질인증 획득을 통해 앞으로 더욱 철저한 품질관리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홈페이지는 전체적인 시스템 및 서비스 개편으로 올해 1월 2일부터 새롭게 서비스하고 있는데

웹 접근성·웹 호환성 등 국제표준 준수, 브라우저나 이용기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 제공 등 시민들이 의정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17-6호

최근 제·개정 법령

<http://council.chungnam.go.kr>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의료법 시행령 48

산지관리법 시행령 5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3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96호, 2017.6.2., 일부개정]

개정이유

댐건설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한 경우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3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과 사전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목적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댐건설과 이해관계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제4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의 반영 여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댐건설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5조 신설)

- 1) 사전검토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은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정함.
- 2) 사전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댐 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제출함.

다.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제14조의2 신설)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시 댐의 사용에 따라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를 검토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댐의 사용을 승인할 경우 승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댐의 평가에 관한 평가사항과 평가시기(제18조의3 신설)

댐의 평가사항을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으로 정하고,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시기에 맞추어 댐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마. 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대행기관(제24조의2 신설)

수익자부담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납할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 등으로 정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131호, 2017.6.20., 일부개정]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제도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및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 방법 등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세부 확인 조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 1)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이나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접근 권한의 제한 및 해당 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 등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제10조의5 신설)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통일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의 서식·용어·내용 등에 관한 사항,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조·형태·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의무기록의 표준 대상으로 정함.

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10조의6 신설)

- 1)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되어야 하는 등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을 정함.
-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계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신청에 대하여 그 인증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그 인증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

라. 의료업 휴·폐업에 대한 확인 조치(제17조의2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을 적정하게 처리·완료하였는지 여부, 진료기록부 등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보관하였는지 여부 및 환자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88호, 2017.6.2.,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등을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토석채취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6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등(제2조)

지목이 전(田), 답(畓), 과수원 등인 토지 등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산지를 농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에도 산지로 보아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산지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도록 함.

나.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제3조 신설, 제12조제13항 및 제13조제6항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산지전용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변경협의 절차(제6조제1항, 제52조제3항제1호·제52조제6항제1호 및 제52조제7항제2호)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경우 그 산지면적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미 협의한 지역 등에 대하여 변경협의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산지면적을 기준으로 협의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산림청장의 지역 등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권한 중 변경협의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산지면적을 기준으로 위임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절차 관련 규정의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고, 관련 변경협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절차(제15조제1항 및 제52조제6항제3호의2·제3호의3, 제52조제3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52조제7항제3호의2·제3호의3 신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그 산지면적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산림청장의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에 관한 변경허가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해당 허가를 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절차 관련 규정의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의 보관(제20조의5 신설)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 서류 등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함.

바. 산지전용이 완료된 토지의 건축물 등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26조의2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산지전용 등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되어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

지역 변경이 있거나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기간이 경과한 후 최초의 도시·군관리계획 정비가 있기 전까지 산지전용 허가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세부기준 마련(제41조 및 별표 8의3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 기간 동안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를 하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을 정함.

아.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변경신고 기준의 완화(별표 8 제3호자목 신설)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을 채취하는 자가 허가 받은 면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수 있도록 하여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변경신고의 기준을 완화함.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7.6.3.] [행정자치부령 제121호, 2017.6.2., 일부개정]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을 직접 청구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도 직접 발송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법률 제1435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055호, 2017. 5. 29. 공포, 6. 3. 시행)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서식들을 삭제하는 한편, 고장자동차의 표지 중 안전삼각대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과 일치시키고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교통소양 교육의 과목 및 교육방법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삼각대 요건 및 설치기준 변경(안 제40조)

- 1) 종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안전삼각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규칙에서 독자적으로 안전삼각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법령에 안전삼각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삼각대의 기준을 해당 법령의 안전삼각대 기준에 따르도록 함.
- 2) 종전에는 고속도로 등 운행 중 고장 자동차 등으로부터 안전삼각대는 100미터 이상, 섬광신호 등은 200미터 이상 뒤쪽 도로 상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추가 사고 발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하도록 함.

나. 즉결심판통지예고서 및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 서식 삭제(현행 제151조제3항, 별지 제171호서식 및 별지 제172호서식 삭제)

종전에는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어 불이행자 본인에게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는 적발통보를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즉결심판통지예고서 및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 서식을 각각 삭제함.

다. 교통소양교육 과목 및 교육방법 개편(안 별표 16 제2호나목)

종전에는 교통소양교육 대상자 중 음주운전 외의 사유로 교육을 받게 된 사람은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교육과목 및 시간 등을 달리하였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과목 및 시간을 통일하고, 교육방법도 토의, 검사 등 대상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통소양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17-6호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http://council.chungnam.g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56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60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에 위탁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등포구의회 동의 여부를 얻어야 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안건번호의견17-0143회신일자2017-06-05

질의요지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에 위탁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등포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에 위탁한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도 영등포구의회 동의 여부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영등포구의회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459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중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에 영등포구청장이 위탁한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과조치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법관계를 새로운 법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구법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전성의 요구를 조화시키고 신·구 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 두는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30. 의견 제시 14-0229 참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459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중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에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가 제정 조례에 따른 절차(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 동의 등)를 거치지 않아 조례 위반의 소지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들이 그 위탁기간까지는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에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되어 운영되고 있던 사무들에 대하여 위탁계약에 명시된 위탁기간까지는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그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지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02. 10. 선고 2010 추11 판결).

이 사안의 경우, 민간위탁 자치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그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 영등포구의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민간위탁과 달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가 아닌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위탁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여전히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도 영등포구의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영등포구의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때 영등포구의회회의 동의대상은 ‘민간위탁 여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초의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위탁과 달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만약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모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위탁기간의 종료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의회 동의 규정을 형해화할 수 있는 점,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영등포구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영등포구의회 동의는 해당 사무의 위탁기간이 3년 이내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2. 12. 7. 의견제시 12-0394 참조).

따라서, 영등포구민간위탁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영등포구의회 동의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 광주시의회 -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과 관련하여 해석 질의

안건번호의견17-0126회신일자2017-06-14

질의요지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다녀온 후 미지급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

의견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다녀온 후 미지급된 여비는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제1호),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제2호),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제3호)을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시조례”라 함)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및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의 금액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본문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다녀온 후 미지급된 여비에 대해서도 광주시조례 제4조 본문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광주시조례 제4조는 지방의회의원이 구금상태로 인하여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함에도 지방의회의원직을 유지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금상태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의원의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및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와 같이 실비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여비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광주시의회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였다면” 같은 규정에 따른 해당 의원에 대한 여비의 지급요건은 구금상태 전에 이미 완성된 것이므로, 그 후 지방의회의원이 구금상태가 되었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여비 지급요건의 완성 사실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지방의회의원에게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발생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면, 지방의회의원의 구금 시점이나 여비의 지급 방식(사전·사후 정산 등)에 따라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도 있으므로, 광주시조례 제4조의 규정은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가 된 이후부터는 실비보상적 비용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광주시조례 제4조 단서에서는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어야만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발생한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에 대

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 이후부터 발생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 이후에 지방의회의원의 여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금상태에 있기 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다녀온 후 미지급된 여비는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EMO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17년 6월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연 락 처 : (041) 635-5123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